



산재보험 요율 인하 결정고시

골판지포장제조업 산재율

23/1000 에서 17/1000 로 인하

노동부 제공

- 노동부는 2002년도 산재보험 요율을 확정하여 고시했다(노동부고시 제 66호). 내년도 산재보험요율을 평균은 14.9/1000이며 금년(16.7/1,000) 대비 1.8/1,000 인하되었으나, 금년도 평균요율 산정시 3년이 되지 않아 적용이 제외되었던 금융보험업을 포함할 경우 2001년도 평균보험요율은 15.2/1,000로 실제 하락폭은 0.3/1,000이다.
 - 최저요율을 적용받은 업종은 금융보험업으로 4/1,000이며, 최고요율적용 업종은 별목업으로 319/1,000로 나타남
 - 요율이 인하된 업종은 도금업, 항공운수업, 건설업 등 6개 업종이며, 이중 건설업의 요율이 1/1,000이 하락하였는 바,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서 대부분 다른 업종의 요율은 전년과 동일하거나 소폭 인상된 수준이다.
- 산재보험요율의 결정은 2002년도 산재보험기금 수입·지출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보험료수입 금액(1조 9,055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적용사업장의 임금총액을 추정하고 업종별 수입영향율을 감안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한다.
- 이와 함께 재해율, 수지율 보험급여 지급율 등 유사성이 있는 4개 업종을 통폐합하여 현행 62개 업종을 58개업종으로 조정하였다
 - 특히, 골판지, 기타종이제품제조업을 기타제조업에서 펄프 및 지류제조업으로 포함하여 그 간 불합리한 업종의 적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

※ 업종 통폐합 내용



- 펄프 및 지류제조업과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을 통합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통합
- 신문· 화폐발행 및 출판업과 경인쇄업을 통합
- 수상운수업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을 통합

○ 또한, 노동부는 건설공사 및 하도급 노무비율도 확정·고시하였는 바, 이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각각 총공사금액의 28%와 36%이며, 별목업 노무비율의 경우는 금년보다 2,468원이 하락한 1m³당 13,357원으로 고시 하였다.

구 분		2001년	2002년
건설공사	노 무 비 율	28%	28%
	하도급노무비율	36%	36%
별 목 업 노 무 비 율		15,825원(1m ³ 당)	13,357원(1m ³ 당)

○ 이와 함께 노동부는 작년 7.1부터 산재보험가입이 가능하게된 중소기업사업주에 적용되는 2002년 임금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고시하였다. 중소기업사업주의 임금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범위내에서 고시하여 근로자의 보상수준과 형평성을 유지 하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사업주의 선택의 자유를 고려하여 7단계로 구분하였다. 2002년 도 월평균 임금액은 1등급이 최저보상기준금액인 930,000원이고 7등급은 최고보상기준금액인 3,812,520원이다.

구 분	임 금 액(월)	평균임금(월)
1 등급	930,000	31,000
2 등급	1,410,000	47,000
3 등급	1,890,000	63,000
4 등급	2,370,000	79,000
5 등급	2,850,000	95,000
6 등급	3,330,000	111,000
7 등급	3,812,520	127,084



2002년 산재보험요율

(단위 : 1000분율)

사 업 종 류	2002	사 업 종 류	2002
1. 광 업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정밀	9
석탄광업	311	기구제조업	12
금속 및 비금속광업	248	수제품 제조업	23
채 석 업	121	기타제조업	7
석회석광업	82	3. 전기, 가스 및 상수도업	33
제 염 업	23	4. 건 설 업	33
기타 광업	61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43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16
2. 제조업		자동차여객운수업	55
식료품제조업	15	화물자동차운수업	28
담배제조업	7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8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8	화물취급사업	6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16	항공운수업	16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46	운수관련 서비스업	8
목제품 제조업	37	창 고 업	8
펠트·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17	통 신 업	8
신문, 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6	6. 임 업	319
인 쇄 업	15	별 목 업	21
화학제품 제조업	16	기타의 임업	99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8	7. 어 업	16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30	8. 농 업	16
고무제품 제조업	16	9. 기타의사업	16
도자기제품 제조업	21	농수산물위탁판매업	13
유리 제조업	15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7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27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51
시멘트 제조업	23	건설기계관리사업	11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43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6
금속가공업	7	기타의 각종사업	4
금속제련업	33	0. 금융 보험업	4
금속재료품 제조업	20		
도 금 업	22		
기계기구 제조업	11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5		
전자제품 제조업	26		
선박건조 및 수리업	14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21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 해외파견업 : 14/1000